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유소 ·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대부분 지자체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주유소 등록기준을 운영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비요청 함.

## □ 개정이유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2014. 9. 19)
  -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법령 근거가 없는 거리기준 고시로 정비요청

## □ 현황 및 문제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주유소 등록 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등록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한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 도시계획 또는 건축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유소 입지 등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 근거가 부족한 등록기준의 운영 및 자의적인 해석으로 민원 제기 및 주유소 등록관련 업무의 신뢰성 저하 초래

## □ 정비기준

- 주유소 입지 및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은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관련 법령에 근거한 제한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
  - ⇒ 관련 법령 검토결과 (붙임2)

□ 개정내용(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p>1. 등록절차</p> <p>주유소·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서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또는 별지 제32호 서식)를 구비하여 <u>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에 접수하여야 한다.</u></p>	<p>1. 등록절차</p> <p>주유소·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서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또는 별지 제32호 서식)를 구비하여 <u>서대문구청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수정)</u></p>
<p>2. 등록요건</p> <p>가. 자격기준 생략</p> <p>나. 지역제한</p> <p>(1) 생략</p> <p>(가) <u>공동주택 외벽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외벽(동일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를 연결한 2개 이상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의료시설(약국 제외), 경로당으로부터 25미터이상</u></p> <p>(나) <u>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및 보육 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u></p> <p>(다) <u>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상</u></p> <p>(2) <u>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설치위치는 폭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u></p> <p>(3)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p>	<p>2. 등록요건</p> <p>가. 자격기준 현행과 같음</p> <p>나. 지역제한</p> <p>(1) 현행과 같음</p> <p>(가) ---- <u>외벽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외벽(동일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를 연결한 2개 이상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삭제), -----, -----, <u>어린이놀이터(추가) -----</u></u></p> <p>(나) <u>어린이놀이터(삭제), ----- 어린이집으로부터(수정) -----</u></p> <p>(다) <u>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상(삭제)</u></p> <p>(2) <u>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설치위치는 폭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삭제)</u></p> <p>(3) 건축법,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주택법(수정)</u>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p>

현행	개정
<p>다. 시설기준</p> <p>(1) 생략</p> <p>(2)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은 1개소(남·여 구분 설치하고 총면적 15제곱미터이상)이상 설치하고 항시 개방하여야 한다.</p>	<p>다. 시설기준</p> <p>(1) 현행과 같음</p> <p>(2) ----- -----<u>(남·여 구분 설치하고 총면적 15제곱미터이상)(삭제)</u>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 및 <u>「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u>에 따른다) (추가) -----</p>
<p>라. 취급유종</p> <p><u>휘발유·등유·경유 또는 바이오혼합연료유·알코올혼합연료유·석탄액화연료유</u></p> <p>3. 제출서류</p> <p>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u>제40조제2항</u>에 규정된 서류로 한다.</p> <p>4. 등록신청 처리</p> <p>생략</p>	<p>라. 취급유종</p> <p><u>휘발유·등유·경유 또는 바이오혼합연료유·알코올혼합연료유·석탄액화연료유(삭제)</u></p> <p><u>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6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연료로 한다.(수정)</u></p> <p>3. 제출서류</p> <p>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u>제40조제3항(수정)</u>에 규정된 서류로 한다.</p> <p>4. 등록신청 처리</p> <p>현행과 같음</p>

-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유소 등록 개정 고시(안) 1부.  
2. 관계법령 검토결과 1부.  
3. 타구 개정사례 1부.  
4. 관련법 발췌 1부.  
5.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각 1부. 끝

붙임 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별표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고시합니다.

2014.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고시

#### 1. 등록절차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또는 별지 제32호 서식)를 구비하여 서대문구청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 2. 등록요건

##### 가. 자격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이어야 한다.

##### 나. 지역제한

(1)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는 다음 시설등과 주유소의 방화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 의료시설(약국 제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로부터 25미터이상

(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50미터이상

(2)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주택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다. 시설기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36조 제2항 [별표2]에 의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은 1개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이상 설치하고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 라. 취급유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6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연료로 한다.

#### 3. 제출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에 규정된 서류로 한다.

#### 4. 등록신청 처리

제출서류가 완비되면 관련공부 및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 부 칙

①(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등록된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붙임 2)

□ 서대문구 주유소 등록 고시 관계법령 검토결과

서대문구 주유소 고시 내용 (주유소 입지·도로와 관계기준)		근거법령 등 검토 결과		
대상 시설	거리 기준	거리 기준	근거법령 등	결과
공동주택	25미터 이상	25미터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규정	현행유지
건축법에 의해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벽	25미터 이상	-	근거법령 없음	삭제
의료시설(약국 제외)	25미터 이상	25미터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규정	현행유지
경로당	25미터 이상	25미터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규정	현행유지
어린이놀이터	50미터 이상	25미터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는 25미터로 규정	25미터 이상
유치원	5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규정	현행유지
보육시설	5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는 '어린이집'만 규정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으로 수정
학교출입문	50미터 이상	-	근거법령 없음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 호에서는 고압가스, 천연가스, LPG 저장소만 규정	삭제
폭 20미터 이상 도로와 인접할 것	-	-	근거법령 없음	삭제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하고 총면 적 15제곱미터이상			근거법령 없음	삭제

붙임 3)

타 구 주유소 등록기준 개정고시 사례

주유소 입지·도로 기준		개정내용
대상 시설	거리기준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은평구, 강서구, 종로구, 관악구, 마포구, 강남구, 금천구
건축법에 의해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벽	25미터 이상	삭제
어린이놀이터	50미터이상	25미터 이상
학교출입문	50미터 이상	삭제
폭 20미터 이상 도로와 인접할 것	-	삭제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하고 총면적 15제곱미터 이상		삭제
※ 서대문구 주유소등록 기준 고시 타구와 동일함.		

이외 자치구 : 주유소 등록고시 정비 진행 중